MAS(다수공급자계약) 정정공고 내용 요약 안내

○ **정정공고번호** :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80402368-07 호(2023. 3. 13)

구 분	당 초	변 경
□ '적격성평가 시 제출 서류 (1차 제출)'에 관한 사항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및 붙임도면(공고에 첨부된 '막구조물 규격서(다수공급자계약용)'를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도면 포함)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및 붙임도면(공고에 첨부된 '막구조물 규격서(다수공급자계약용)'를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도면 포함)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제출하는 규격서 내용 중 '3. 필요조건'의 '3-1. 재료'의 '주재료 공급자 및 원산지'는 계약이행 시 실제 소요되는 자재의 공급자 및 원산지로 기재하여야 하며, 자재의 원산지가 다를 경우에는 규격(모델)명을 달리하여 작성 ※ 계약 후, 계약규격(막재 원산지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7조에 따라 반드시 수정계약(규격서 변경 등)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막구조물 제작에 소요된 자재의 원산지가 계약규격과 상이하게 수요기관에 납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충설명

1) MAS계약 규격서 상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를 하나의 규격(물품식별번호)당 1개 막재회사만 허용, 기계약된 규격서상 2개이상 막재회사로 복수 기재된 건은 반드시 1개 막재회사로만 수정계약(규격서 변경 등) 요청하여야 하며,
2) 제2막재 회사, 제3의 막재회사를 등록하는 경우 규격(모델명)을 달리해서 각각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은 후 품목 추가계약을 요청해야함

구 분	당 초	변 경
⑧ 신설 (증빙자료 제출)	없 음	⑧ **협상대상수요물자의 규격별 '막재' 공급자 및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막재 매입 세금계산서 등)**

* 보충설명 : 기 계약된 막재별로 막재회사에서 구입한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는 막재별로 1건씩 제출하시고, 아직도 납품실적이 없는 막재의 경우 해당 재질의 막재회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 회원사별 조치 사항

1)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모델 중 막재회사가 복수로 기재된 모델은 1개 막재회사로 수정계약 요청하시고, 다른 막재회사를 등록하시려면 모델명을 달리하여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 품목 추가 계약을 요청하여야함
2)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막재(PVDF, PVF, PTFE, TIO2, ECM, ETFE)별로 각각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막재회사로부터 공급확약서(협회에서 막재회사와 협의하여 승낙함)를 발급받아 추가 제출
3) 동일 세부품목이면 2단계경쟁 시 주재료 공급자(막재회사)가 상이하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다만 2단계경쟁 시 랜덤으로 뽑힌 회사 모델(식별번호 등록 막재)이 낙찰 되는 경우 이 회사가 입찰참여한 모델의 식별번호로 등록 막재로만 납품하여야하고 다른 회사 막재로 납품은 계약 위반으로 제재 받을 수 있음
4) 수정계약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가급적 수정계약 요청은 빠른 시일내 조치 바랍니다, 왜냐하면 막재회가가 복수 기재된 모델에 대하여는 납품지시가 불가할 것임